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현행 만21세인 입학연령 상한을 만23세로 변경〉

■ 성일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241호)

■ 성일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243호)

2025. 9.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 참고자료	
1. 최근 5년간 사관학교 입학경쟁률	7

I. 제안경위

1. 의안번호 2211241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1) 발 의 자 : 성일종의원 등 11인
- 2) 발 의 일 : 2025. 7. 3.
- 3) 회 부 일 : 2025. 7. 4.

2. 의안번호 2211243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1) 발 의 자 : 성일종의원 등 11인
- 2) 발 의 일 : 2025. 7. 3.
- 3) 회 부 일 : 2025. 7.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의안번호 2211241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육군·해군·공군의 정규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해 육군·해군·공군에 각각 사관학교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을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자로 한정하고, 제대군인의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 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가 사관생도 입학에 엄격한 나

이 제한을 두어 지원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 감소 등에 따라 사관생도의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됨.

이에 사관학교 입학자격을 현행 “17세 이상 21세 미만”에서 “17세 이상 23세 미만”으로 개정하여 사관학교 입학 기회를 확대하고 향후 우수한 병역자원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호).

2. 의안번호 2211243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의 간호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해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국군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을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자로 한정하고, 제대군인의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 간호장교를 양성하는 국군간호사관학교가 사관생도 입학에 엄격한 나이 제한을 두어 지원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 감소 등에 따라 사관생도의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됨.

이에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자격을 현행 “17세 이상 21세 미만”에서 “17세 이상 23세 미만”으로 개정하여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 기회를 확대하고 향후 우수한 병역자원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현재 21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이하 “사관학교”로 통칭)의 입학연령의 상한을 23세 미만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입학자격) ① 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3조(입학자격) ① ----- ----- -----.
1. 17세 이상 <u>21세</u> 미만의 미혼일 것.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	1. ----- <u>23세</u> ----- --. ----- ----- -----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인구감소,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가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로 나타나고 있음.¹⁾

구체적으로 1983년 2.06이었던 합계출산율은 2024년 0.75명까지 하락하여 전세계 198개국 중 최하위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 합동,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2022. 12. 28.

총인구는 2020년 5,184만명으로 정점에 이른 이후, 2021년부터는 하락세로 전환하여 2025년의 총인구는 5,169만명임.

특히 병역자원이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데, 2020년 33.4만명이었던 만 20세 남성인구는 2022년 27.4만명으로 감소하였고, 2025년에는 23.6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음.²⁾

이처럼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우수한 군 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의 사관생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³⁾

또한, 군 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가 사관생도 입학에 엄격한 나이 제한을 두어 지원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사관학교 입학자격을 현행 “17세 이상 21세 미만”에서 “17세 이상 23세 미만”으로 변경하여 사관학교 입학 기회를 확대하고 향후 우수한 병역자원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임.

□ 군 장교를 배출하는 사관학교와 유사하게 경찰간부를 배출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찰대학의 경우에는 「경찰대학 설치법」 제3조에서 경찰대학 입학자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에서는 입

2) 정부 관계부처 합동발표, 인구구조 변화와 전망, 2022. 2. 10.

3) 사관학교 입학경쟁률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참고자료 1. 최근 5년간 사관학교 입학경쟁률 참조

학연령을 17세 이상 42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⁴⁾⁵⁾

또한,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2008년 입학연령 상한을 폐지하였고, 소방·경찰공무원도 기존 30세였던 응시연령 상한을 40세로 연장하는 등 공직임용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임.

[공무원 응시연령 상한 변동현황]

구분	응시연령 상한		
	기본	변경	
공무원 임용시험령	5급 32세, 7급 35세, 9급 32세	-	'08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상한 폐지
소방공무원 임용령	소방간부후보생 30세, 소방사 30세	소방사 40세, 소방간부후보생 40세	'12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상한 변경
경찰공무원 임용령	경찰간부후보생 30세, 순경 30세	경찰간부후보생 40세, 순경 40세	'12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상한 변경

※ 자료: 국방부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육·해·공군사관학교의 경우에도 우수한 입학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안과 같이 입학연령을 만17세 이상 만 23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사관학교 입학연령의 상한을 연장하여 보다 많은 사람에게 사관학교 입학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우수한 병역자원

4) 「경찰대학 설치법」 제3조(입학자격) 경찰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3조에 규정된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입학자격) ① 경찰대학의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입학연도에 17세 이상 42세 미만일 것. 다만, 입학연령 상한을 1세 넘은 사람으로서 1월 1일에 출생한 사람은 입학할 수 있으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를 준용하여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

5) 다만,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군인과 다르게 임용연령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군인이 계급별 연령정년을 두고 있는 것과는 달리 60세로 모두 동일한 연령정년을 두고 있음.

확보에 기여하고, 「경찰대학 설치법」 등의 관계 법령에서 입학 나이 상한을 연장한 타입법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임.

□ 국방부는 입학 기회를 확대하여 사관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⁶⁾

다만, 국방부는 각군 사관학교의 장교 임관연령 상향으로 인하여 계급별 진급시점과 정년연령의 간격이 감소하는 문제가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⁷⁾ 관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임.⁸⁾

문 의 처

02)6788-5304

6) 국방부는 장기복무 장교 육성을 위해 사관학교를 운영 중인 미국의 경우에도 개정안과 같이 사관학교 입학 최고연령을 규정하여 우리나라보다 넓은 연령대의 장교자원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에 대응하여 우수한 초급장교를 모집하기 위해 입학 최고연령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7) 국방부는 다음 계급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계급 정년에 도달되는 경우 입학연령이 상향되는 기간만큼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며, 해당 인원이 많아질 경우 공석이 많이 발생되어 진급 또는 획득할 소요가 증가할 우려가 있음. 또한 매 계급에서 1차 시기에 진급하지 못하고 후기에 진급할 경우 영관급에서는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정년에 도달될 수도 있다는 것임.

8) 참고로, 제21대 국회에서 동일한 입법취지로 임병헌의원이 「사관학교법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9408)을 대표발의하여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되었으나, 임기말 발의로 임기만료폐기된바 있음.

※ 참고자료

1. 최근 5년간 사관학교 입학경쟁률

구 분	육 사			해 사			공 사		
	모집 정원	지원자 (경쟁률)	입학생	모집 정원	지원자 (경쟁률)	입학생	모집 정원	지원자 (경쟁률)	입학생
2018년	330명	11,281명 (34.2 : 1)	306명	170명	6,537명 (38.5 : 1)	166명	215명	8,469명 (39.4 : 1)	204명
2019년	330명	14,663명 (44.4 : 1)	322명	170명	3,271명 (19.2 : 1)	164명	215명	10,480명 (48.7 : 1)	193명
2020년	330명	8,655명 (26.2 : 1)	303명	170명	3,692명 (21.7 : 1)	164명	235명	5,392명 (22.9 : 1)	213명
2021년	330명	8,062명 (24.4 : 1)	313명	170명	3,512명 (20.7 : 1)	163명	235명	4,850명 (20.6 : 1)	195명
2022년	330명	8,532명 (25.8 : 1)	입 학 전	170명	3,177명 (18.7 : 1)	162명	235명	5,024명 (21.4 : 1)	입 학 전
2023년	330명	9,549명 (28.9 : 1)	294명	170명	4,270명 (25.1 : 1)	168명	235명	7,086명 (30.2 : 1)	205명
2024년	330명	9,834명 (29.8 : 1)	312명	170명	4,361명 (25.7 : 1)	163명	235명	8,830명 (37.6 : 1)	227명

※ 자료: 국방부